

쪽수	구분	수정 전	수정 후
92	I. 학생생활교육	도움 자료 >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개정안(교육부, 2025. 2)	도움 자료 >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개정안(교육부, 2026. 2)
93	I. 학생생활교육	도움 자료 > 2025 학생생활교육 운영 매뉴얼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운영 지침(생활인성교육과, 2025. 2) > 2026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계획(생활교육과, 2025. 12) > 2026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현황(생활교육과, 2025. 12)	도움 자료 > 2026 학생생활교육 운영 매뉴얼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운영 지침(생활인성교육과, 2026. 3) > 2026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계획(생활교육과, 2025. 12) > 2026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현황(생활교육과, 2025. 12)
94	II. 학교교육공동체 인권교육	도움 자료 > 경기도교육청 경기학생인권위원회 수립 학생인권 참여보거 자료실 > 학교공동체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(학교교육연구과, 2023. 2) > 학교공동체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(학교교육연구과, 2023. 2) > 학교공동체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(학생인권교육과, 2023. 2) > 보호자 소식지<우리의 존엄이 꽃피는 학교> 제5호(학생생활교육과, 2022. 11) > 경기도 학생인권 수첩(교육부, 2021. 12) > 학교공동체 인권교육 학습지도서(학생생활인권과, 2020. 5) > 2025년 학생인권교육 운영 계획(생활교육과, 2025. 3)	도움 자료 > 경기도교육청 경기학생인권위원회 수립 학생인권 참여보거 자료실 > 학교공동체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(학교교육연구과, 2023. 2) > 학교공동체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(학교교육연구과, 2023. 2) > 학교공동체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(학생인권교육과, 2023. 2) > 보호자 소식지<우리의 존엄이 꽃피는 학교> 제5호(학생생활교육과, 2022. 11) > 경기도 학생인권 수첩(교육부, 2021. 12) > 학교공동체 인권교육 학습지도서(학생생활인권과, 2020. 5) > 2026년 학생인권교육 운영 계획(생활교육과, 2026. 2)

□ 제2편 학교폭력 대책

쪽수	구분	수정 전	수정 후
97	II. 학교폭력 사안처리	- 교원: 학교장이 위촉 - 집중 보호 또는 관찰 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	- 교원: 학교장이 임명 집중보호 또는 관찰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
97	II. 학교폭력 사안처리	- 학교폭력 사건 발생 인지 및 신고 접수 - 신고 접수 및 학교장 보고 - 학교폭력신고 접수 대상에 기록 후 학교장 보고 및 담임교사 통보 - 사안조사 - 학교폭력제로센터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또는 학교 소속 교원이 피해·가해학생, 학부모, 목격자 면담 - 사안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아닌 사항 - 단, 심의위원회에서 '학교폭력 아님'으로 결정할 경우 '조치없음'으로 처리	- 학교폭력 사건 발생 인지 및 신고 접수 - 신고 접수된 사안을 학교폭력신고 접수 대상에 기록 후 학교장 보고 및 담임교사 통보 - 사안조사 - 학교폭력제로센터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또는 학교 소속 교원이 피해·가해학생, 학부모, 목격자 면담 - 사안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아닌 사항 - 단, 심의위원회에서 '학교폭력 아님'으로 결정할 경우 '조치없음'으로 처리 가능
98	II. 학교폭력 사안처리	- 학교장 자체해결제 -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, 진술, 자료제출 등에 보복행위 가 아닌 경우 - 학교장 자체해결제 - 학교장 자체해결의 절차: 사안조사(전담기구 및 조사관의 조사 과정에서 자체해결 방식 강요하지 않음) → 전담기구 심의(가해학생 여러 명일 경우 모두 요건 해당되어야 자체해결 가능) →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 서면 확인 → 학교장 자체해결 교육지원청 보고 → 관련학생 보호자 통보(유선, 서면, 문자 등) - 학교장 자체해결제 - 학교장 자체 해결 시 유의사항 -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아 심의위원회 개최가 요청된 경우 조치결정 이전까지 서면으로 표명하면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 - 학교폭력 관련 학생의 소속학교가 다른 경우: 피해 및 가해학생이 명확한 경우 피해학생 학교의 전담기구에서 심의, 명확하지 않거나 쌍방인 경우 양쪽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피해 사실과 가해 사실을 조사하고 전담기구에서 심의 - 관계회복 및 분쟁조정 (분쟁조정) 피해·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및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위원회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음	- 학교장 자체해결제 -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, 진술, 자료제출 등에 보복행위 (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) 가 아닌 경우 - 학교장 자체해결제 - 학교장 자체해결의 절차: 사안조사(전담기구 및 조사관의 조사 과정에서 자체해결 방식 강요하지 않음) → 전담기구 심의(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 및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서면확인) → 학교장 자체해결 결재 및 교육지원청 보고 → 관련 학생 보호자 통보(유선, 서면, 문자 등) - 학교장 자체해결제 - 학교장 자체 해결 시 유의사항 -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아 심의위원회 개최가 요청된 경우 조치 결정 전까지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 의사를 학교에 서면으로 표명하면 학교장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취소할 수 있음 - 학교폭력 관련 학생의 소속학교가 다른 경우: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는 피해학생 소속 학교의 전담기구에서 심의 후 해당 학교장이 결정, 가해학생 소속 학교에서는 피해학생 소속 학교의 결정을 따라 전담기구에서 심의, 정확한 사안조사를 위하여 가해학생 소속 학교에서 조사한 사안 내용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학교장 승인하에 긴밀하게 협조 필요 - 관계회복 및 분쟁조정 (분쟁조정) 피해 및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및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의 조정을 의미
99	II. 학교폭력 사안처리	-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-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,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학생에 대한 접촉,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,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, 제4호 사회봉사, 제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, 제6호 출석정지, 제7호 학급교체, 제8호 전학, 제9호 퇴학처분	-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-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,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학생에 대한 접촉, 협박 및 보복행위(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)의 금지,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, 제4호 사회봉사, 제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, 제6호 출석정지, 제7호 학급교체, 제8호 전학, 제9호 퇴학처분

□ 제3편 학생안전

쪽수	구분	수정 전	수정 후
105	I 학교안전사고 예방교육	도움 자료 ▶ 2025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(학교안전과, 2024. 12.)	도움 자료 ▶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 업무매뉴얼(학교안전과, 2025. 11.)
106	II. 아동학대 예방교육	2. 아동학대 피해학생 보고 및 지원 ☞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비밀 준수 ☞ 피해학생 취학지원 및 학적 관리 ☞ 비밀엄지: 아동보호전문기관 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☞ 등교학습: 학적 지체 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각재정의 요청에 따라 원학교가 아닌 보호시설 등 근교 학교에서 등교 학습을 지원해야 함 ☞ 학적지체(출석안정):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요청 시 학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☞ 피해학생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☞ 60(90분) 센터 등 전문기관 연계 지원 ☞ 학습권 보호를 위한 등교학습 지원	2. 아동학대 피해학생 보고 및 지원 ☞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비밀 준수 ☞ 피해학생 취학지원 및 학적 관리 ☞ 비밀엄지: 아동보호전문기관 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☞ 등교학습: 학적 지체 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각재정의 요청에 따라 원학교가 아닌 보호시설 등 근교 학교에서 등교 학습을 지원해야 함 ☞ 학적지체(출석안정):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요청 시 학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☞ 피해학생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☞ 60(90분) 센터 등 전문기관 연계 지원 ☞ 학습권 보호를 위한 등교학습 지원
107	II. 아동학대 예방교육	도움 자료 ▶ 2026 위기학생 지원 계획(생활안전교육과, 2025. 2.)	도움 자료 ▶ 2026 위기학생 지원 계획(생활안전교육과, 2026. 2.) ▶ 아동권리보장원
109	III 폭력 예방교육	도움 자료 ▶ 2025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 안내 지침(영양가축과, 2025. 1.) ▶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	도움 자료 ▶ 2026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 안내 지침(영양가축과, 2026. 1.) ▶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
113	IV 학교안전 공제회	도움 자료 ▶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▶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학교 사용자 매뉴얼(학교안전총괄팀, 2025. 3.)	도움 자료 ▶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▶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학교 사용자 매뉴얼(학교안전총괄팀, 2025. 3.) ▶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학교 사용자 매뉴얼(학교안전총괄팀, 2025. 3.) ▶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학교 사용자 매뉴얼(학교안전총괄팀, 2025. 3.) ▶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학교 사용자 매뉴얼(학교안전총괄팀, 2025. 3.)

<IV. 교무행정>

□ 제1편 학교업무 효율화

쪽수	구분	수정 전	수정 후
137	I. 불필요한(효율적인) 업무	K-에듀파인 기안문 샘플서식 탑재하여 기안 시 바로 활용 가능	K-에듀파인 기안문 샘플서식 탑재하여 기안 시 바로 활용 가능
139	II. 단위 학교 위원회	관련 법령 ▶ 초·중등교육법 제31조(학교운영위원회 설치) ▶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2(무교과관리위원회의 설치) ▶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의2(소위원회)	관련 법령 ▶ 초·중등교육법 제31조(학교운영위원회 설치) ▶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2(무교과관리위원회의 설치) ▶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의2(소위원회)

□ 제2편 학적관리

쪽수	구분	수정 전	수정 후
148	IV. 중학교 재취학 및 편입학·귀국학 생 등 관리	학 학기를 내리거나 올릴 수 있음	한 학기를 내리거나 올릴 수 있음
154	VI. 고등학교 재입학, 전학 및 편입학	「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·운영에 관한 특별법」	「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·운영에 관한 특별법」

[illegible][illegible]

제9편 학교도서관 운영

쪽수	구분	수정 전	수정 후
269	I. 학교도서관 운영	도움 자료 ▶ 2025년 학교도서관 진흥 시행계획(행정교육과, 2025. 2.) ▶ 2025년 경기교육도서관 정책 추진 기본계획(교육정책과, 2025. 1.)	도움 자료 ▶ 2026 학교도서관 진흥 시행계획(행정교육과, 2026. 2.) ▶ 2025년 경기교육도서관 정책 추진 기본계획(행정교육과, 2025. 1.)

제11편 학교운동부

쪽수	구분	수정 전	수정 후
285	I. 학교운동부 및 개인학생선수	6. 개인학생선수 입부 흐름도 목적 학교운동부 관리업무 흐름도 개인학생선수 선발·입부 · [의결] 개인(클럽) 학생선수 선발 절차 및 연인활동계획서 작성 관련 가정통신문 발송 연인활동계획서 수합 · [의결] 개인학생선수 선수등록증 및 연인활동계획서 수합 후 담당교사 검토 학업성적관리·위원제 상의 · [의결] 개인(클럽)부 선수에 대한 대회(올림픽) 참가시 출결자의 및 부일괄은 다득 (경기고지 출결신청 여부, 인정률 부여 등) 노 형식부에 해당 내용을 포함해서 작성 학교장 허가 (내부결재) · [의결] 개인 학생선수 연인활동계획 승인	■ 내용수정 학교장 허가 (내부결재) [수시] 개인 학생선수 연인활동계획 승인